

조리

62/

기안용지

문부처호 갑 구
문서번호 181.5 ~ 20

(전화번호 3 0 7)

조리제 685

발신계장	발수과장	기각관리관	제1부서장	시	장	국무총리
장	이	정	장	장		

성	조					
장수	유	각	안	관	조	등
관	신					
자	국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설치조례제지에관한조례				

1970. 6. 16 서울특별시조례 제629호로 제정

방오원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설치조례는 광주대단지사업
원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발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니다. 함.

원안대로국시민과보판
 원본대조필
 1970. 6. 16

서울특별시

0001

~~0101~~

(공 포 안)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설치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혁 식

1972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설치조례폐지에관한조례

1970. 6. 18 서울특별시조례제 621호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0002

계 지 이 유

이 조계 공포시행과 동시에 설치운영하여온 서울특별시 광주내 탐지사업소외 사업 일체가 서울특별시로 부러 경기도로 이관함으로써 당해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광수대단지사업소설치조례

1970. 6. 18 조례제 621호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불량건물(무허가건물) 일소와 위성도시건설의 일환으로 대단지(수백지)건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수대단지사업소(이하사업소라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3조(직부) 사업소는 다음의 직부를 관장한다.

- 가. 단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나. 수백단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다. 철거된의 정작에 관한 사항
- 마. 구포및 방역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

제4조(공무원)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정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조직) 사업소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두되 그 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0004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0005

5